

강령

전문

우리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현대 사회의 지향을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이어받아, 경제적 수준에 어울리는 성숙한 제도와 문화를 사회 전반에 안착시킬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전례가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장기 침체, 포퓰리즘 확산과 정치 양극화 등 이른바 선진국형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압축 성장을 일구던 ‘한강의 기적’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제들이다. 과거의 방식대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양적인 성장만 우선해 주먹구구식으로 자원을 배분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획일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개성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선진국들이 반면교사이다. 출산률 0.7이 상징하듯,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기점 앞에 서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변화를 선도할 정치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를 자임하는 거대 양당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어 있다. 양당은 사회적 대타협은커녕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행위를 정치력이라고 여긴다. 구조개혁은 말로만 떠든다. 재탕 삼탕 혁신안으로 문제를 감추고, 속이 빈 개혁안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다. 팬덤

정치라는 전체주의 문화로 퇴보하고 있기도 하다. 각자가 상대를 가리키며 개혁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 악의 균형이 양당 정치의 현 모습이다.

우리는 기득권 균형으로 타락한 과거의 보수, 진보 진영과 결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이 한층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중도대연합을 구축해 미래로 전진할 것이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정치 문화를 신조로 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새로운선택은 중도대연합의 공통 목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대통령제를 넘어 의원내각제로 이행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제약적 대통령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신냉전 안보 위기, 고령화 인구 위기 등에 대처하려면 정부의 책임감이 높아야 한다. 입법과 행정의 맞물려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제의 특징이 행정과 입법 사이 견제,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 분권이라면,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입법과 행정의 통일, 정부 전체에 대한 집권당의 무한 책임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나라로 발전하려면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끄는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은 필연이고 필수다.

새로운선택은 총선과 대선에서 수차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단계적 내각제 이행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밀실야합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합의 가운데 내각제 개헌을 완수한다. 특히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대폭 줄이고,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진화한다.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청년투자국가를 건설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면 2055년 즈음에는 25~6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같아진다.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노후 연금을 받는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같은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 국가재정부터 노동시장까지, 대한민국의 제도 전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구 위기는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청년이 개성과 재능을 발휘해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출산율도, 생산성도 높아진다. 급증하는 노인 복지 제도 역시 청년의 행복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청년투자국가가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투자를 자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주관적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택과 교육 비용 문제는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최고의 정책적 목표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신냉전 시대에 맞는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탈냉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신냉전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였고, 대중국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덕분에 외환위기도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냉전 경제안보 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와 안보 상황도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대중 무역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북한-중국-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휘두르는 군사적 위협의 강도 또한 한층 커졌다.

이제 신냉전 경제안보 시대에 적합한 대외 전략을 구축할 때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군사 차원뿐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질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국간 다층적 연례 회의를

정기화하되, 무엇보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를 망가뜨리는 특정 정치 진영의 선동을 일소할 것이다. 반일 또는 혐중 선동을 하는 정치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선동으로 이웃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만큼 국민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완수한다

성숙한 대한민국은 성 역할, 부와 소득, 세대와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로 적당히 뭉겼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극단적 갈등 요인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낡은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남녀 간 성 역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병역부터 가사까지 남녀가 평등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서 근원적 문제를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선진국 수준에 맞게 촘촘하게 강화할 것이다.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체계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개혁 역시 단행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 교통, 대학, 산업을 부흥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각각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다.

끝으로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 전 사회적 노력을 경주한다. 세계적 탄소중립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학적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초당적 관점에서 수립해 나갈 것이다.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안전시설 확충 역시 시급하다.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에 우리가 지닌 각별한 정책적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끝)

2023.11.29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새로운선택'이라 한다.

제2조(목적) 새로운선택은 성숙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도대연합을 실현한다.

제3조(조직) ①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새로운선택은 중앙집중형 정당을 지양하며, 시·도당으로의 분권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 ①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의 임무를 다한 자를 당원으로 한다.

② 당원의 구분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당비) 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대표
2. 당 소속 국회의원
3. 시·도당위원장
4.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6. 당 소속 시도지사
7. 시·도당에서 추천한 대의원
8. 중앙당 당직자

제10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의장의 선출
3.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4. 당대표와 전국위원의 선출
5.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전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권한을 전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3. 시·도당위원장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천한 10명 이내의 당원

③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13조(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5.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 전국위원회는 소집이 곤란한 경우 권한을 상임전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5인 이내의 당원

제16조(권한) ①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개정안의 심의와 발의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7. 전국대의원대회 및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2. 전국대의원대회 및 전국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3.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14.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상임전국위원회는 권한을 당대표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등) ①상임전국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4절 당대표

제18조(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 ②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며 당헌·당규를 준수한다.
- ③ 당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 ④ 당대표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당대표의 선출) ①당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명한다.

②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20조 (선거인단 구성)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당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당대표
- 2.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 3.당대표가 추천한 5인 이내의 당직자

제22조(권한) ①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2.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등 당직자 임면에 관한 협의
3. 공천관리위원장 등 임면에 대한 의결
4.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제23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6절 집행기구

제24조(사무처)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집행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 보좌 및 사무처 업무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⑤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상설 및 특별위원회) ①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대변인) ①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중앙당 운영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지역조직

제7절 시·도당

제28조(시·도당)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대의원대회) 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사무처장

2.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3. 해당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4. 해당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해당 시·도당 소속 중앙당 대의원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7. 기타 해당 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② 시·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소집 및 운영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시·도당위원장(대표)이 소집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 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4. 기타 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기타 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31조 (시·도당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결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단, 시·도당대회 연기,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당 대표 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최대 3개월 임기 내에서 시·도당대회 전까지 유효한 시·도당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32조 (사무처)

① 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무기관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8절 지역위원회

제33조(지역위원회) ① 시·도당 내에 기초 지역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지역위원회에는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9절 의원총회

제43조(지위 및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및 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및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45조(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제10절 원내대표

제46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제47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의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당대표의 요구나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장 공직선거

제49조(공직선거후보자 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둔다.

② 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상임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는 공천관리위원장과 대표를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중앙당후원회

제52조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독립기구

제53조(윤리위원회) ①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총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3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당 집행위원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③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회계

제56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집행위원회 동의를 거쳐 당대표가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당헌 개정

제58조(발의)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

제59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위원회 의장 또는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전국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당규의 제정 등) ①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중앙당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 발의가 있을 경우

2. 중앙당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②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1장 보칙

제61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 (합당과 해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해산할 때에는 전당대회 또는 전당대회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및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정당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령 및 당헌에 심각한 위반이 있는 시·도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당대표가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④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이 당헌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당규 제정 시까지는 중앙당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창당대회 특례) ①창당대회는 임시전당대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창당대회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선정한 당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③창당대회에 한해 창준위 운영위원회 및 참석 당원의 의결로 당대표를 선출할수 있으며 이후 당대표는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등 간부를 지명 하여 선정한다. 또한 창당대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대의기관)를 갈음하며 대의기관의 장도 당대표가 겸임한다.

④대표 및 대표가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가 소집될 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